

#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6
----------	-----

제출년월일 : 2001.6.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자금의 교부대상에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기업도 포함함 (안 제3조).
- 나. 필요할 경우 안산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2 신설).
- 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직능별 위원의 수를 포괄적으로 정함 (안 제7조).
- 라. 사업을 위탁하였을 경우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수탁자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2제6항 신설).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와 제4조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
-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조례 제6조 제1항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
- 2001(제7차)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본문중 “공장등록을 필하고”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사업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를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안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산테크노파크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및 관련 분야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장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수탁기관이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중 “3개월”을 “1월”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자금을 교부하고 수탁기관에서 대학으로 재교부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사업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		첨 단 산 업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첨단산업과장 신 용 석
	담당·팀장 직위·성명	미래산업팀장 석 승 일
	담 당 자 성명·전화	송 근 창 (행정 2284)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 (교부대상) 시장은 주 사무소와 공장이 안산시내에 소재하며 <u>공장등록을 필하고</u>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3조 (교부대상) ----- ----- <u>〈삭제〉</u>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 (위원회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략)</p> <p>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연구원 3인 2. 대학교수 5인 3. 안산시의회 의원 1인 4. 기업체 연구소장 3인 5. 기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p> <p>⑤ ~ ⑧ (생략)</p>	<p>제4조의2 (사업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를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안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산테크노파크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7조 (위원회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및 관련 분야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 □ 관계법령 발췌서

### 1.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97. 4.10 법률제5331호)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에 의하여 우선지원과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기업
3.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4. 상시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기업. 다만, 제조업 관련서비스업은 30인이하인 기업

**제4조 (공장등록등에 관한 특례)** 소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으로 본다.

###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기관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지원계획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3.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

**제6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시의 사무중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기술기반조성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76
----------	-----

제안년월일 : 2001. 6. 23.

제안자 : 경제·사회위원장의외6명

## 1. 수정이유

- 조문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는등 조문 일부를 수정함.

## 2. 주요골자

-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을 상세히 규정함(안 제43조의2)
- 제7조의2의 제6항의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수탁기관이 대신하게 할수 있도록 한 규정은 동조 제3항의 실무위원회는 위원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한 규정과 상반되어 삭제함.(안 제7조의2)

##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신청·접수에 관한 업무
2. 사업평가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사업비 재교부에 관한 업무
4. 현지실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5.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7조의2 제6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의2(사업관리의 위탁)①(생략)  <u>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산테크노파크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p> <p>제7조의2(실무위원회)          ①~⑤(생략)  <u>⑥시장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수탁기관이 대신하게 할 수 있다.</u></p>	<p>제4조의2(사업관리의 위탁)①(원안과 같음)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          1. <u>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신청·접수에 관한 업무</u>          2. <u>사업평가 및 운영에 관한 업무</u>          3. <u>사업비 교부에 관한 업무</u>          4. <u>현지실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u>          5. <u>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한 업무</u></p> <p>제7조의2(실무위원회)          ①~⑤(원안과 같음)  <u>〈삭 제〉</u></p>
<p>제11조(교부방법 및 시기)          ①~②(생략)  <u>③시장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자금을 교부하고 수탁기관에서 대학으로 재교부한다.</u></p>	<p>제11조(교부방법 및 시기)          ①~②(원안과 같음)  <u>③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u></p>